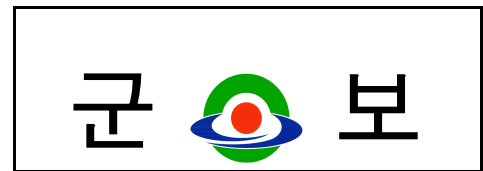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63호 2019. 4. 22.(월)

선 람	기 관 의 장

훈 령

-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예천군 훈령 제410호)

예 규

-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 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예천군 예규 제1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4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10호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천군 공무 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실 근무경력 3년 이내인 사람
2.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
3. 최근 3년 이내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음주운전, 도박 등)로 징계를 받은 사람
4. 최근 공무 국외여행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단, 학회, 협회 등에 주제발표자로 참가할 경우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교육대상자, 포상유공자 등은 예외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퇴며, 부위원장”을 “퇴고, 부위원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퇴며, 간사는 총무업무담당 주사가”를 “퇴고, 간사는 총무팀장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여부

가.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나.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다.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무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 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 수령 관련
 - 수령 여부 : ☐ 여 / ☐ 부
 - 신고 여부 : ☐ 여 / ☐ 부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IV.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1(허가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u> <u>1. 실 근무경력 3년 이내인 사람</u> <u>2.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u> <u>3. 최근 3년 이내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음주운전, 도박 등)로 징계를 받은 사람</u> <u>4. 최근 공무 국외여행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단, 학회, 협회 등에 주제발표자로 참가할 경우 제외)</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교육대상자, 포상유공자 등은 예외로 한다.</u>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되고, 부위원장----- ----- 주민복지실장 ----- 되고, 간사는 총무팀장이 -----.

만 공무 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
서 제외한다.

제12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여
행허가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9.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6조(사후관리)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제12조(심사기준) ① -----
----- 각 호와
-----.

1. ~ 9. (현행과 같음)

10.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
치 적정성 여부

가.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
병 발생 여부

나.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항
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다.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
락체계 수립 여부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여행
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
여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
술을 관련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 국외여행 허가 관리대
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4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예규 제18호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예천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과 영화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예천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과 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기준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1. 영 화 : 1,000원 (감면 없음)
2. 공 연

(단위 : 원)

기획공연료 기준	관람료		비고
	일반권	할인권	
3천만원 이하	3,000	2,000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5,000	3,000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000	5,000	
5천만원 초과	10,000	8,000	

※ 할인권 대상 :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 다자녀가정, 20인 이상 단체 등

제3조(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 ① 관람권 판매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예매 및 현장판매를 병행한다.

② 관람료는 출납공무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대표원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

③ 출납공무원은 매일의 관람권 판매현황을 별지 서식의 관람권 판매 일일 결산 보고서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권시스템에 의한 발권인 경우 시스템에서 집계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수입관리) 관람료 수입금은 예천군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계좌에 납부한다.

제5조(무료 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공연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자에 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급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예천군이 문화 소외계층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 발행 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관람료 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

하여는 공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자에 한한다.

1. 어린이(만 4세 이상 ~ 만 13세 미만)
2. 청소년 (만 13세 이상 ~ 만 18세 미만)
3.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4. 다자녀가정
5. 20인 이상 단체

제7조(관람취소 등) 공연 또는 영화 관람을 위하여 예매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관람이 어려운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한다.

1. 관람일 8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환급
2. 관람일 7일전~4일전까지 취소 시 예매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3. 관람일 3일전~2일전까지 취소 시 예매금액의 20% 공제 후 환급
4. 관람일 1일전까지 취소 시 예매금액의 30% 공제 후 환급
5. 당일관람 예매권은 환급 불가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관람권 판매 일일결산 보고서

공연명 :

20 년 월 일 ()

결 재	담당자	팀 장	소 장

구 분		일 계					누 계					비 고
		일련 번호	매수	인원	입장료	총액	일련 번호	매수	인원	입장료	총액	
개 인	일반권											
	할인권											
	무 료											
단 체	일반권											
	할인권											
	무 료											
총 계												

※ 영화 관람권 판매의 경우 개인 일반권 칸에 작성.

